

日本の国会

THE NATIONAL DIET OF JAPAN



日本国東京都千代田区永田町1丁目7番1号

参議院事務局

<http://www.sangiin.go.jp/eng/>

2018년 6월



인쇄 株式会社エデュプレス

本冊子は紙ヘリサイクル可

무단전제 도용 절대 금지합니다

참의원

목차

국회 의사당 1

 국회 의사당의 건립 2

 의사당 중앙 현관, 참의원 의원용 정문 현관 4

 중앙 홀 5

 참의원 본회의장 6

 천황폐하 휴게실 8

 참의원 의장실, 의장 응접실 9

 위원회실 10

일본의 국회 12

 지위 / 조직 / 권한 / 국회의 소집 및 회기 12

 개회식 / 시정방침 연설 / 본회의 13

 상임 위원회, 특별 위원회, 조사회 및 헌법 심사회
 / 국정조사 / 청원 14

 중의원과 참의원의 관계 / 참의원의 긴급 집회 (긴급 소집)
 / 재판관에 대한 탄핵 / 사무국 및 법제국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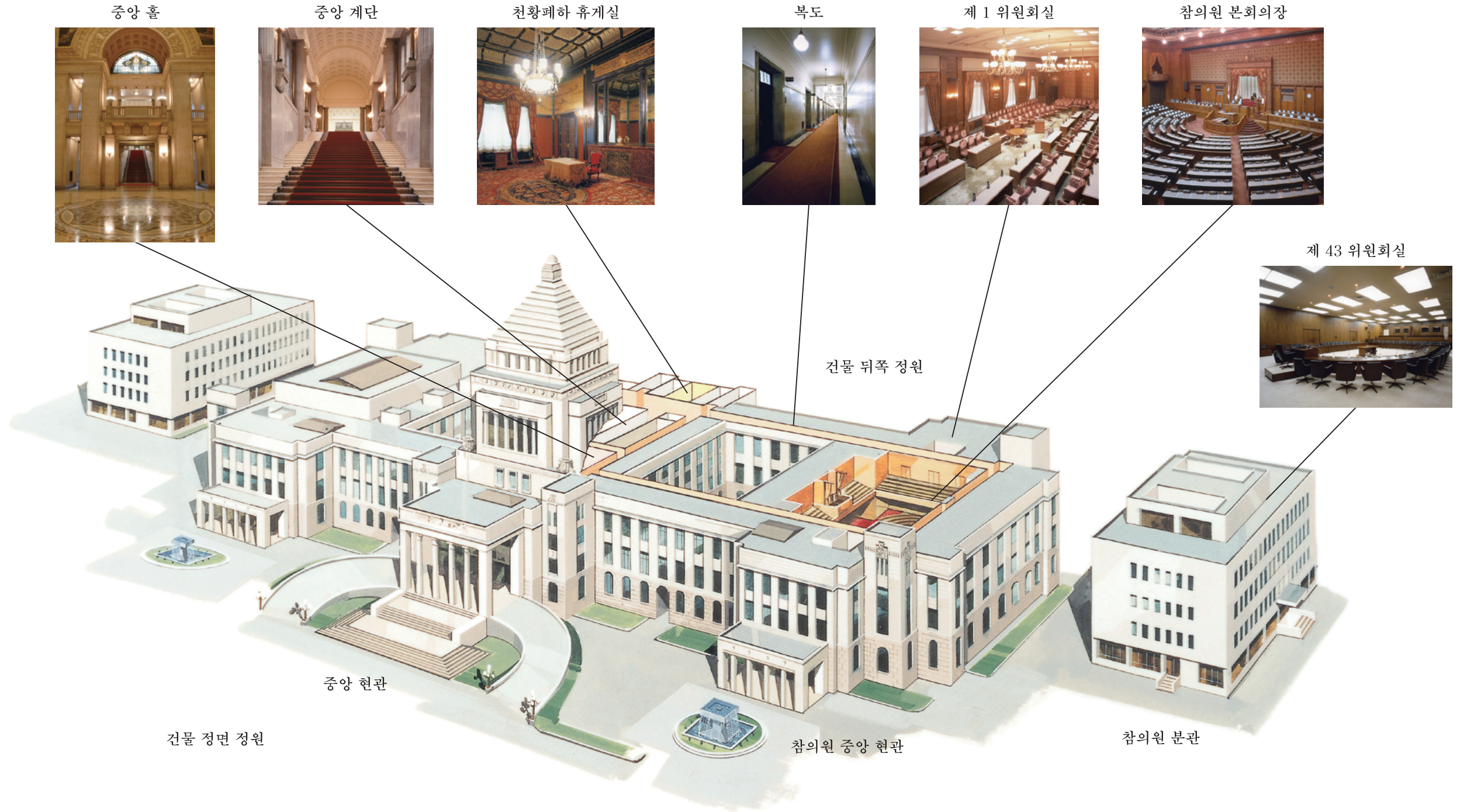
 입법 과정 16

국회 주변 지도 20



긴자(銀座)에서 사쿠라다문(櫻田門)을 지나 직선으로 나란히 서 있는 은행나무의 아름다운 가로수 길을 가다 보면 정면에 보이는, 치요다구(千代田區) 나가타초(永田町)의 언덕 위에 우뚝 솟은 웅장한 백악의 건물이 바로 국회 의사당입니다. 의사당 앞은 도심지의 오아시스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정원 안에 나무가 우거지고, 뒤쪽에는 의원회관 등 국회에 관계되는 건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어 일본 정치의 중심지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회 의사당 배치도



국회의사당의 건립

국회의사당은 1918년에 일반 국민에게 디자인을 현상 모집하여 당선 작품을 참고로 설계되었습니다. 1920년 1월에 착공하여 17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1936년 11월에 완성되었습니다. 중앙 탑을 중심으로 왼쪽이 중의원, 오른쪽이 참의원입니다.

의사당은 지상 3층 건물로서 중앙의 탑은 9층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03,007 m², 건물 총면적은 53,464 m²입니다.

이밖에 의사당 본관 북쪽에는 참의원 분관이 있으며 이 건물은 1969년 12월에 위원회 회의실을 증설하기 위해서 건립되었습니다.

의사당 중앙 현관

중앙의 문은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평상시에는 열리지 않지만 천황께서 오셨을 때, 외국의 국가 원수가 국회를 공식 방문했을 때, 그리고 선거 후에 새로 당선된 의원이 국회에 처음으로 등원했을 때만 열립니다.



참의원 의원용 현관과 등원 표시판

참의원 의원이 참의원에 등원했을 때는 입구에서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 등원했음을 표시합니다.



중앙 홀

중앙탑 바로 밑에 중앙 홀이 있으며 여기가 의사당의 중심입니다. 천장과 창문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되어 있고 바닥에는 대리석의 모자이크로 화려한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홀 면적은 267.65㎡, 천장까지의 높이는 32.62 m입니다. 중앙 홀에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네 개의 받침대 위에 세 명의 '헌정 공로자'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의회제도 확립에 공헌하였습니다. 네 번째 받침대는 비어 있는데 이는 장래의 위대한 정치인을 위해 남겨 놓은 것입니다.

벽화

중앙 홀의 상부 사면에는 일본의 사계절을 묘사한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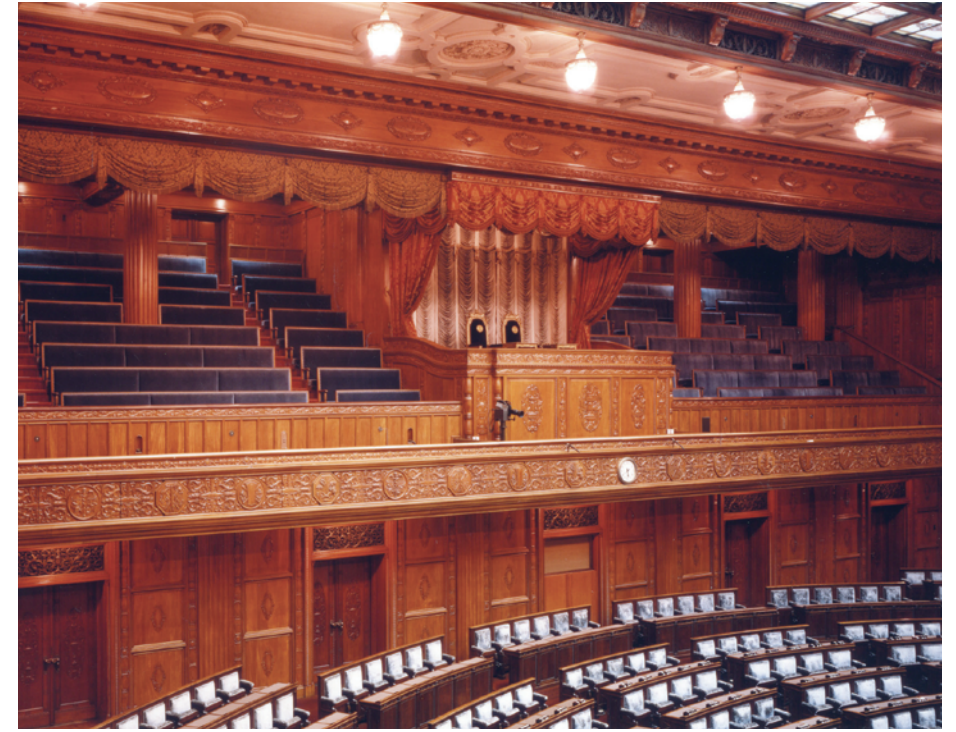




참의원 본회의장

참의원 본회의가 열리는 본회의장은 국회의사당 2층에 있으며, 천장에는 당초 문양의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루어진 천창(天窓)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은 폭 32 m, 길이 23 m, 천장까지의 높이는 13 m입니다. 본회의장 정면 앞에는 의원석을 마주보듯이 의장석과 연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석수는 총 460석(의원 정수는 248명)이 있으며 연단을 중심으로 반원형(半圓形)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높은 의자가 있는 자리가 의장석이며 그 왼쪽에는 사무총장석, 연단 아래에는 속기사석이 있습니다. 의장석 뒤쪽에 있는 하얀 커튼 안쪽에는 개회식 때 천황께서 임석(臨席)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의장석 좌우에 두 줄의 자리가 있는데 앞줄은 국무대신석이며, 내각총리대신은 좌측의 제일 오른쪽에 앉습니다. 뒷줄은 사무국 직원석입니다.



방청석

원칙적으로 본회의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기자석과 일반 방청석은 본회의장 2층에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된 참의원 본회의장의 천창



천황폐하 휴게실

국회가 소집되면 천황께서는 국회의사당에 오셔서 개회식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개회식에 참석하시기 전에 천황께서는 이 방에서 잠시 휴식하시고 중의원(衆議院)과 참의원(參議院) 의장 및 부의장과 대면하십니다.



중앙 계단

중앙 계단은 중앙 홀에서 천황폐하 휴게실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천황께서 오셨을 때만 사용되었습니다.



참의원 의장실



참의원 의장 응접실

이 응접실은 참의원 의장이 외국 영빈을 맞이할 때, 혹은 의원 운영 위원회가 개최될 때 사용됩니다.

위원회 회의실은 의사당 본관 안에 5개, 분관 안에 10개가 있습니다.



제 1 위원회실



제 43 위원회실



제 3 위원회실



양원 협의실

이 방은 중앙 현관의 위쪽에 있으며 양원 협의회에 사용됩니다.

일본의 국회

일본국 헌법은 1946년 11월 3일에 공포되어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새 헌법 하에서 첫 국회가 같은 해 5월 20일에 소집되었습니다.

국회의 지위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이자 유일한 입법 기관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제41조).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직접 대표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국회는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이므로 국회만이 법률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조직

일본의 국회는 참의원(參議院)과 중의원(衆議院)의 양원(兩院)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의원(議院)은 각각 독립해서 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두 의원의 의결이 완전히 일치되었을 때 국회의 의사가 성립됩니다.

중의원의 의원 정수는 465명으로 그 중 176명은 비례대표제로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선출되며, 그 밖의 289명은 소선거구제로 선출됩니다. 참의원의 의원 정수는 248명이며 그 중 100명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고 그 밖의 148명은 원칙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돗토리현(鳥取縣)·시마네현(島根縣), 토쿠시마현(徳島縣)·코치현(高知縣)은 2개 현이 1개 선거구〉을 단위로 하는 45개 선거구에서 선출됩니다.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지만 3년마다 의석의 반수가 다시 선거를 하게 됩니다.

국회의 권한

국회는 입법권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1) 국가 예산의 심의 의결
- (2)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의 심의 승인
- (3)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 (4) 헌법 개정에 관한 제안

참의원과 중의원은 각기 별도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을 심의합니다. 각 의원(議院)은 각각 의장, 부의장 및 상임 위원장을 선거로 선출합니다. 매년 회기 초에 필요에 따라 특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회의에 관한 절차 및 중참 양원의 의원(議院) 내부의 규율에 관한 규제를 제정하는 일, 원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가 있는 의원에 대하여 징계를 가하는 일 등이 가능합니다.

국회의 각종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의원은 이하의 각종 중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즉 법률안 및 결의안을 제출하는 일, 국가 차원의 전반적인 정치 문제에 관하여 내각에 질문하고 회답을 요구하는 일, 의안에 대해 질의하고 토론 및 표결에 참여하는 일 등입니다.

국회의 소집 및 회기

국회의 소집은 내각이 결정하고 ‘소집 증서’가 공포됨으로써 소집됩니다. 국회에는 통상국회, 임시국회, 특별국회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통상국회는 매년 1회, 1월 중에 소집되며 회기는 150일간입니다. 통상국회는 다음 회계 연도의 국가 총예산을 심의하고 그 예산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임시국회는 통상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자연재해 등 해결이 시급한 문제가 국가에 발생했을 때 재해대책의 추가경정예산이나 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해 내각이 소집을 결정합니다. 중의원 또는 참의원의 4분의 1이상의 의원이 소집을 요구했을 때도 내각은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또한 중의원 의원의 4년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실시되는 총선거나 참의원 의원의 통상 선거 후에도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특별국회는 중의원이 해산됐을 때 치러지는 총선거 후에 소집됩니다. 특별국회의 소집과 동시에 현 내각은 총사퇴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두 의원(議院)은 새로운 내각총리대신을 지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임시국회와 특별국회의 회기는 그 때마다 국회가 소집됐을 때 결정됩니다. 또한 통상국회의 회기는 한번, 임시국회와 특별국회의 회기는 두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회식

국회가 소집될 때마다 중참 양원 의원들은 참의원 본회의장에 모여 개회식을 개최하며, 그 때 천황께서 참석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개회식에서는 우선 중의원 의장이 양원을 대표하여 식사(式辭)를 하고 이어서 천황폐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정방침 연설

개회식을 개최한 다음 양원은 각각 본회의를 열어 국무대신(國務大臣)의 연설을 듣습니다. 통상국회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이 시정방침 연설을 하고 이어서 외무대신, 재무대신 및 경제재정정책 담당대신도 연설합니다. 임시국회 또는 특별국회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이 연설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국무대신도 연설을 합니다. 이들 연설에 초점을 맞추어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 질의를 하고 내각총리대신을 비롯한 관계 각 대신이 답변을 합니다.

본회의 (전체회의)

본회의는 그 의원(議院)의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이며 각 의원(議院)의 의사는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본회의는 공개되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전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안이 통과됩니다. 참의원 본회의의 표결 방법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장이 이의(異意)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방법(의원은 구두로 ‘이의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찬성자의 기립을 구하는 방법, 셋째는 기명투표(의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백패를 지참하고 반대하는 의원은 청패를 지참하여 차례로 투표합니다), 넷째는 버튼을 눌러 투표하는 버튼식 투표입니다(의원은 자신의 의석에 설치된 투표기의 버튼을 눌러서 투표합니다). 참의원은 보통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중의원은 보통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1시에 본회의를 개최합니다.

상임 위원회, 특별 위원회, 조사회 및 헌법 심사회

위원회에는 상임 위원회와 특별 위원회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참의원에는 조사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참의원에는 다음과 같은 17개 상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1) 내각 위원회 2) 총무 위원회 3) 법무 위원회 4) 외교 방위 위원회 5) 재정 금융 위원회
- 6) 문교 과학 위원회 7) 후생 노동 위원회 8) 농림 수산 위원회 9) 경제 산업 위원회
- 10) 국토 교통 위원회 11) 환경 위원회 12) 국가 기본 정책 위원회 13) 예산 위원회
- 14) 결산 위원회 15) 행정 감시 위원회 16) 의원 운영 위원회 17) 징벌 위원회

의원은 적어도 하나의 상임 위원회의 위원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별 위원회는 국회가 소집될 때마다 중참 양원의 각 본회의에서 설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사회는 참의원 특유의 조사 기관이며 통상 선거 후에 소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설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사회는 기본 사항에 관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지만 법률안을 심의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상임 위원회, 특별 위원회와 조사회의 위원은 각 정당의 의석수를 근거로 하여 비례배분됩니다. 각 정당이 제각기 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의장이 각 정당이 추천한 자를 위원으로 지명합니다.

또한, 헌법 개정 원안이나 헌법 개정 절차 법안 등의 심사는 헌법 심사회에서 합니다.

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반수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합니다. 심의 사항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나 보도 기자 등 (일반인을 포함)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방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예산, 조약, 법률안 등의 의안 및 청원을 본회의의 의제로 상정하기에 앞서 사전 심의를 하는 기관이므로 각 위원회는 저마다 소관 분야의 안건을 전문적인 입장에 입각해서 상세하게 심사합니다. 그 밖에 각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중 특색이 있는 것으로 국가 기본 정책 위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중의원의 같은 명칭의 위원회와 합동으로 ‘당수 토론’을 실시하는데 이는 내각총리대신을 초청해서 야당 당수와 토론을 벌이는 것입니다.

국정조사

법률 제정이나 정부의 행정활동을 감독하기 위하여 중참 양원은 각각 국가 차원의 정치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국정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들 조사는 위원회가 실시하는데, 조사 방법은 정부 및 관계자의 설명을 청취하여 정부에 질문하거나 자료 제공을 요구하거나 때로는 증인 또는 참고인의 소환을 요구하기도 하며 현지에 위원을 파견하여 조사하기도 합니다. 조사 결과에 입각해서 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법률안을 제출합니다.

청원

중참 양원은 각각 청원을 접수합니다. 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청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원의 소개로 의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청원은 우선 관계 위원회에서 심사됩니다. 내용이 타당한 청원은 본회의를 통과한 후 내각에 송부되어 내각에서 조치가 취해집니다. 내각은 매년 중참 양원에 청원의 처리 경과를 보고합니다.

중의원과 참의원의 관계

국회의 의사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중참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은 참의원에 송부되어 참의원도 가결하면 법률로 성립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참의원에서 중의원이 낸 법안을 수정했을 때는 그것을 중의원에 되돌려 보내 중의원이 다시 수정된 법안을 통과시키면 법률로서 성립됩니다. 의결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양원 협의회’를 열어 양원의 의견을 조정하게 됩니다.

예산, 조약, 법률안 및 내각총리대신의 지명에 대해 중참 양원의 의사에 차이가 있을 때는 헌법이 정한 조건 하에서 중의원은 참의원에 비해 우월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법률안이 중의원을 통과한 후에 참의원에 보내졌는데 참의원이 이 법률안을 부결하여 이를 중의원에 되돌릴 경우, 중의원이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가결하면 그 법률은 성립하게 됩니다. 예산, 조약, 내각 총리대신의 지명에 관해서는 양원협의회를 열어서도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혹은 일정한 기간 내에 참의원이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의원의 의결이 국회 의결로 됩니다. 또한 예산안은 중의원이 먼저 심의합니다.

참의원의 긴급 집회(긴급 소집)

중의원이 해산됐을 때 참의원도 동시에 폐회하여 국회는 활동을 정지합니다. 그러나 중의원이 해산되고 나서 총선거가 끝나 특별국회가 소집될 때까지의 기간에 국가에 어떤 긴급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는 내각은 참의원의 긴급 집회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참의원의 긴급 집회 기능은 국회 기능의 잠정적인 대행에 한정됩니다. 만약 다음 국회가 소집된 후,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긴급 집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긴급 집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즉시 실효됩니다. 지금까지 참의원의 긴급 집회가 열린 것은 두 번에 불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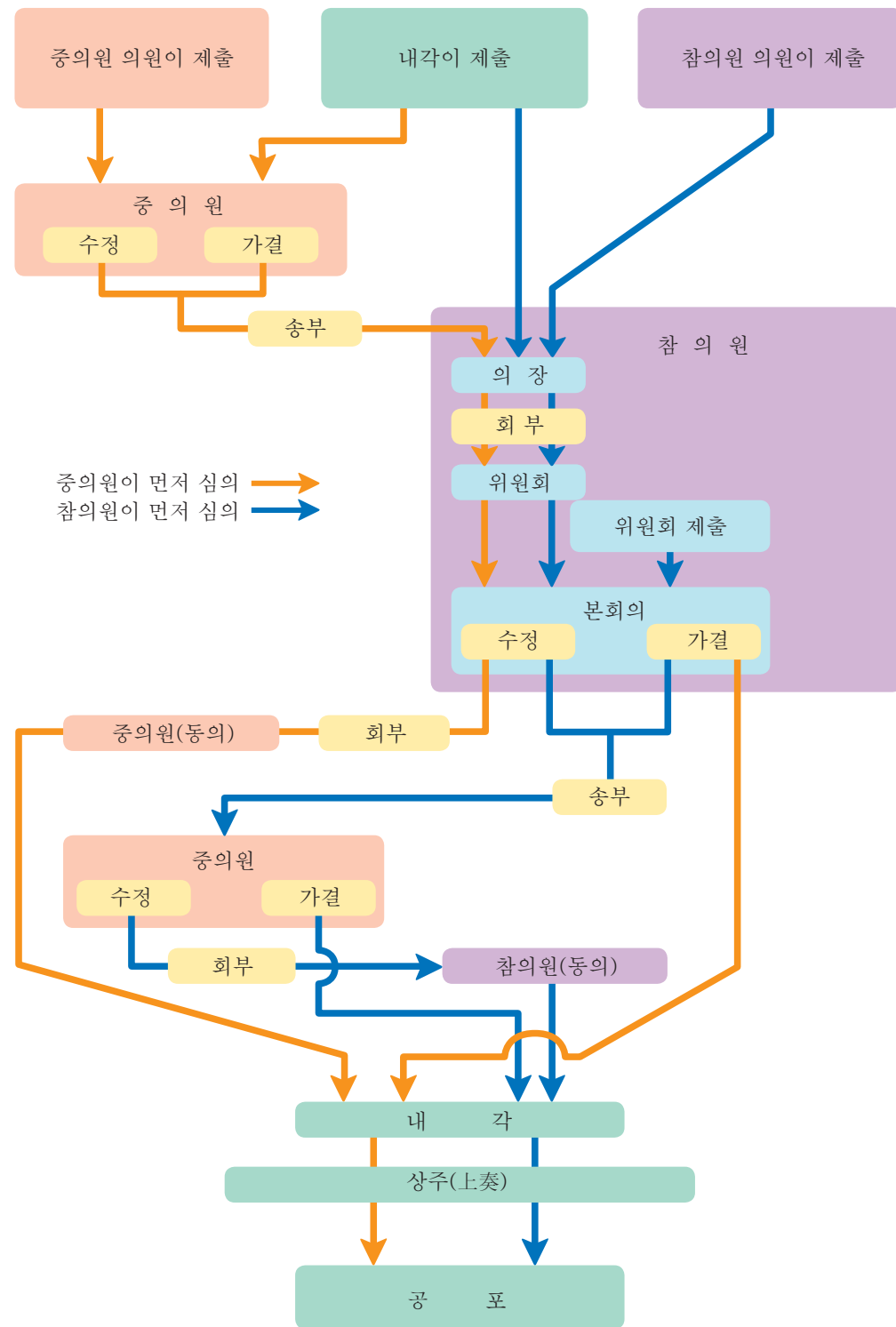
재판관에 대한 탄핵

국회에는 재판관을 탄핵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기관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관에 대해서 파면 소송을 제기하는 기관——재판관 소추 위원회, 또 하나는 파면 소송이 제기된 재판관에 대해서 재판을 행하는 기관——재판관 탄핵 재판소입니다. 이 두 기관의 구성원은 모두 중참 양원의 의원이 담당합니다.

사무국 및 법제국

각종 사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참 양원에는 각각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장 밑에서 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도 그 중 한 부문입니다. 그리고 의원의 입법 활동을 돕기 위하여 중참 양원에는 각각 법제국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법 과정



1. 법률안의 제출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은 제안자 및 찬성자가 연명으로 서명하여 각 의원(議院)의 의장에게 제출한다.

내각이 제출한 법률안은 내각총리대신이 참의원 또는 중의원의 의장에게 제출한다.

2. 회부

의장이 법률안의 심사를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한다.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중요한 법률안은 우선 본회의에서 제안의 취지 설명을 청취한 다음, 위원회에 회부한다.

3. 위원회 심사

- ① 제안의 취지를 설명
- ② 질의
- ③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나 유관 위원회와의 ‘연합 심사회’ 를 개최
- ④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
- ⑤ 토론
- ⑥ 표결

4. 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각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문제에 대한 법률안을 위원장의 이름으로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5. 본회의 심의

- ① 위원장 보고
- ② 토론
- ③ 표결

6. 양원 협의회

양 의원(議院)의 의결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양원 협의회를 열 수 있다. 협의안이 양원에서 가결 되면 성립된다.

7. 상주(上奏)

마지막으로 법률안을 의결한 의원(議院)의 의장은 내각을 통하여 법률을 천황께 보고한다.



봄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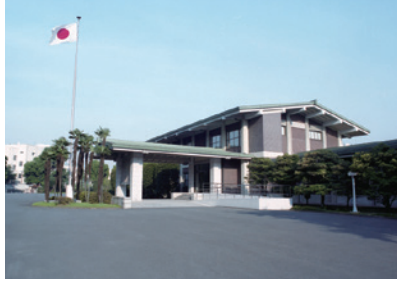


여름



겨울

국회 주변 지도



참의원 의장 공저



참의원 의원 회관

국회의사당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 역
 A) 곳카이기지도마에 (國會議事堂前) 역
 마루노우치 (丸ノ内) 선
 치요다 (千代田) 선
 B) 나가타쵸 (永田町) 역
 유라쿠초 (有樂町) 선
 한조몬 (半藏門) 선
 남보쿠 (南北) 선



1. 국회 의사당
2. 참의원
3. 중의원
4. 참의원 의원회관
5. 중의원 제2 의원회관
6. 중의원 제1 의원회관
7. 헌정기념관
8. 국립 국회 도서관
9. 참의원 의장 공저
10. 중의원 의장 공저
11. 국회기자회관
12. 최고재판소
13. 총리대신 관저
14. 내각부
15. 특허청
16. 국토교통성
17. 경시청
18. 국가공안 위원회(경찰청)
총무성
국토교통성
19. 외무성
20. 내각 법제국
내각부
21. 재무성
22. 문부과학성
금융청
회계검사원